국회입법조사처 | 2022. 4. 11. | 제1935호

이슈와 논점
Issues and Perspectives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김 준 헌

2021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5조 6천억원으로 음식배달산업의 폭발적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배달라이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사자 수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세부담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음식배달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배달라이더(이하 '라이더'라 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라이더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라이더의 수입은 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1]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라이더의 수는 물론 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한 관계로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2022년 라이더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라이더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라이더의 세부담 또한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人的)용역(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나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2 국내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구조

(1) 음식배달산업 현황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배달음식만 공식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2조 7,326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25조 6,847억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75.1%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인해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63.9%에 이를만큼 성장세가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음식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음식서비스	27,326	52,628	97,328	173,336	256,847

※ 자료: 통계청,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각 연도.

과거에는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이 음식배달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직접 고용보다는 플랫폼사(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가 직접 운영하는 배달중개 플랫폼사(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요기요익스프레스)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사(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등)와 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가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ARS
www.nars.go.kr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저 자 김준헌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02-6788-4574 junheon@assembly.go.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현재 라이더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다. 개별언론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라이더의 수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산(2020년 9월 기준)되며, 음식배달시장 성장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 추정된다. 참고로,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달업(우편물 집배, 택배, 음식 배달, 퀵서비스 배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42만 3천명(2018년 31만 3천명)으로 나타난다.[2)]

다만, 2022년 1월부터 플랫폼 종사자[3)] 중 65세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라이더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2) 음식배달산업 구조

음식배달산업은 소비자, 배달주문 앱(프로그램사), 음식점(사업주), 배달대행 앱(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배달대행업체, 배달라이더가 각 주체로 참여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음식배달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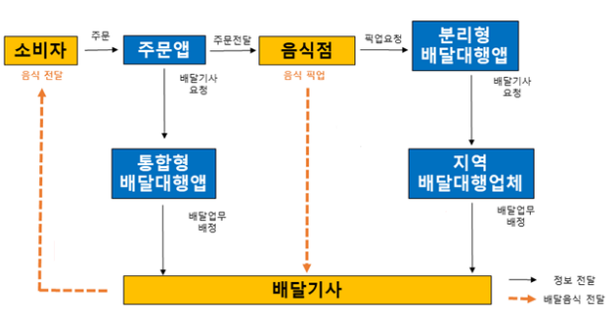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계약서 점검 결과」, 2021. 7. 22.

과거에는 소비자→음식점→배달라이더→소비자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를 나타냈지만, 현재는 ① 소비자→배달주문 앱→음식점→통합형 배달대행 앱→라이더→소비자 또는 ② 소비자→배달주문 앱→음식점→분리형 배달대행 앱→지역배달대행업체→라이더→소비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구조를 띄고 있다.

플랫폼이 배달대행업체 역할도 담당하는 통합형 배달방식(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요기요익스프레스)과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가 각각 존재하는 분리형 배달방식(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등)의 두 종류의 거래구조 중 통합형 배달방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이며, 분리형 배달방식이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

유통단계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 중 소비자, 음식점주(사업주), 배달주문 앱 사업자(프로그램사)가 배달비용을 분담하고, 배달대행 앱,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등은 배달비용으로 수익창출을 거두어야 하는 다단계 거래구조로 인해 비용과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3 라이더의 법적 성격과 소득자료제출

(1) 라이더의 법적 성격과 소득의 유형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5)]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6)]에 따라 라이더의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人的)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라이더는 사업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라이더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모형 확산에 따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들은 계약

2)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21. 10. 19.

3)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4) ㈜ 우아한 형제들, 『배달시장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2.

5)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6)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 저술가 ·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및 종속노동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피고용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7]하며, 자율성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독립계약자' 또는 '자영업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측면에서 라이더는 사업자의 성격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때의 사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소득, 혹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정의된다.[8]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서의 인적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용역 소득은 일차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라이더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2) 소득자료 제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방침에 따라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라이더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가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라이더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또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라 라이더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통합형 배달방식의 경우에는 배민 라이더스와 같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며, 분리형 배달방식의 경우에는 지역배달대행업체이다. 다만, 고용보험과 관련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는 통합형과 분리형 배달방식 상관없이 노무제공플랫폼(배민 라이더스,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등)사업자이다.

4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1) 경비율 조정의 문제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라이더의 소득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해 라이더는 기준경비율코드 940918(퀵서비스배달원)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받는다. 940918코드는 과거에는 퀵서비스배달원만을 의미하는 업종코드였으나 2020년부터는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한 곳에 신속히 배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라이더들의 단순경비율은 79.4%(4천만원 이하), 기준경비율은 27.4%[9]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 중에서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경비율 제도는 복식부기 의무를 지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 시 활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근본적 원인은 과거 이들의 수입규모와 필요경비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소득자료 제출에 따라 라이더의 수입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소액 부징수 규정의 정비

'소액 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2020. 12.

8) 김문정, 『과세자료 활용을 통한 특고종사자 소득 파악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9) 2020년 30.4%에서 3%p 낮아짐

한다. 「소득세법」 제86조[10]는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라이더의 수입금액을 건별로 지급할 것인지 또는 일정기간의 합계액을 지급할 것인지는 배달대행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 간의 사적(私的)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라이더의 수입금액을 건별로 지급하게 될 경우 '소액 부징수'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소득자료 제출 의무에 따라 라이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라이더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으나, 각기 다른 소득 지급체계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연말정산 적용 여부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제14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보험모집인(940906), 방문판매원(940908), 음료배달판매원(940907) 중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한바, 이는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의 납세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10)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표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말정산 비교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해당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수입금액	총 급여	사업소득금액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소득률)
종합소득공제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라이더에 대한 연말정산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이더들이 한 업체가 아닌 다수의 업체에 소속되어 전속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으로 다수의 업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통합형 배달대행의 경우 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의 수가 상당한 바, 연말정산 의무 부과 시 발생하는 납세협력 비용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

5 나가며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라이더의 수입을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라이더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 논란은 줄어들 것이다. 다만, 라이더의 법률상 이중적 지위를 고려하여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행정을 점검하여 라이더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6788-4510
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0623-14
ISSN 2005-744X